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의무 설치 규정(제 34조)과 좋은 대비가 된다.

IV. 개정안에 대한 분석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개정안은 현재 違憲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개념 대신 규제의 대상을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 전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후자는 내용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법부의 뜻이 되어야 할 '위법성 판단'이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거쳐서 결정되고 형사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통제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자율 규제(self-regulation)로의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제 38조) 비록 민간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내용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草案은 적정하지 못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44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고 반박 내용의 게재, 손해 배상의 조정도 할 수 있도록(개정안 제 42조)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轉嫁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廣義로 파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불법 내용물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함으로써 개정안은 자율 규제 이념의 실천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의 뒤에서 형사 책임의 무기를 가지고 정부가 숨어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또 하나의 겸연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교묘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이다²¹⁾.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정부측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물을 차단시켜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석론상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는 취하고 있다²²⁾.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 정보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은 아니다. 더욱이 형사 처벌의 근거를 해석론에 의해 이끌어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罪刑法定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을 엉뚱한 조문에 근거한 牵強附會的 논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보매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되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광의로 파악,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를 매개하는 자가 내용 통제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법 논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직접 만든 자가 아니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용 통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違憲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1)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oecd-398.html>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00. 7. 20

2. 認知 책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에만 (제 36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파악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버렸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 - 정보 매개자 (접속을 제공하는 자) -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슬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내용 차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하다”는 요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즉 현실적으로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극소수 소규모 독립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를 얻으면 내용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연대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다.

법리적으로 이 요건 자체는 1997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법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 제 1조에 규정된 ‘제 3자 제공의 정보를 이용토록 접속하여 주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번역 한 듯하다. 따라서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는 독일 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런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 (제 28조, 36조)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 삭제를 하던 하지 않던 既遂犯이 되어 버리고 내용 삭제를 할 경우에는 量刑에서 정상참작만 되어 버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친다.

불법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有無罪를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告知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하고 표현되는 내용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도 가능케 하는 違憲 조항

임에 틀림없다. 즉 내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히 확정, 규제하려 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廣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違憲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다. 실제 불법 내용물을 사후에 認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통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내용 검열을 수시로 하더라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刑事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망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자끼리도 과도한 상호 내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외에 다른 정당한 정보까지도 사업자에 의해 다 함께 미리 걸러지도록 만들 수 있음을 물론이다.

결국 개정안은 불법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자, 심지어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접하는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쉽게 刑事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구조를 통해 사전에 사적 검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내용 등급제

청소년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가 등급을 부여하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 보호법과 대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등급을 표시하면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

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成人에게는 불 권리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를 폄고 있다.

즉 “기존의 심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사이트 목록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에게 귀속되어지는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용 등급제는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CRA(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결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등급제 자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 어떤 내용의 제공이 스스로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CNN,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언론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내용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라도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기관은 사업자를 내세운 내용 검열에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기관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감시 구조가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라면 내용 등급제 프로그램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보이콧 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내용 등급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CDA처럼 내용 규제를 형사처벌로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재 까지는 가장 강력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가 국

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내용 등급제인지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틀속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²³⁾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는 외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제 77조 제 4항)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등급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 34조) 점에서 결코 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 등급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단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 등급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학문 자유에 대해서도²⁴⁾ 직접적 위협이 되는 違憲 조항이다.

정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를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즉 미국식의 자율 규제 모델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계층의 높은 정보이용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는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부분의 불법 정보 사이트가 놓여 있으며, 청소년 보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통산성 주도하의 내용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일본에서 내용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면에 등장하는 것

23) 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가 200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Self-labelling and filtering)에서 강조한 원칙중의 하나도 최종 이용자가 정보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http://www.ipso.cec.be/iap/INCOREreport.doc>

24) 특히 공립 학교에서 정부가 만든 내용 등급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思想의 통제로 인한 違憲 서비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5) 각주 22의 공청회 자료 참조.

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난다.

이런 결론은 설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여전히 등급제 운영의 주체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회 자체가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남아 있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

V. 두려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민주주의에서의 언론 자유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가질 때 지켜질 수 있다.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법과 제도가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전화, 라디오, 치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새로운 언론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늘어났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감할 수 있지만 개인이 speaker이면서 listener가 되고, 자기가 만든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보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부의 간여는 유해한 내용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나 사전 경고와 같은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상실된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CDA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내용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최근 전국 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시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기준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②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③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고전적인 언론 자유인 '정치적 비판의 자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비판을 匿名으로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가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 기관이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급을 매기는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假裝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형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을 假裝한 교묘한 타율 규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인 셈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비교적 정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또 심지어는 영장없이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식과 법 논리에 의해 쉽게 해답을 낼 수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 (state censorship)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넓게 定義한 사업자를 정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하도록 법을 통해 유도한다면 '사적 단체로 검열이 잠적하여 버리는 구조' (privatized censorship)가 되어 버리며, 헌법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가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단체들이 부단히 같이 노력한 정도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표현수단(이하 온라인매체)은 이제 특별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부분을 포함하는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다. 온라인표현수단을 매개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모임이나 회사들이 형성되고 기존의 개인이나 모임, 회사도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가상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현실사회의 개인과 조직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법 제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관계 조직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서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우선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사실화하려 하였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권력집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언론에는 정보통신부가 내 놓은 안의 특징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 질서확립법은 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형식이나 사실상 새로운 제정법률안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형태의 행정규제장치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심

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먼저 위 질서확립법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존 위원회의 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용등급분류권한과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 온라인 사회의 얼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 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신설되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기구들이다. 이는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권리의 집중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하지 않고 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다.

둘째 위 질서확립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를 가지고 있는 중인만큼 이를 확대규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확대된 내용의 '불법정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한 것, 문서에 의한 고지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일상적인 행정검열을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 허위정보, 사행행위, 음란한 영상 등의 포함적 개념들은 사법부에서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끝과 그 끝에 대한 논란이 중단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법률이 보장하는 것과 같다.

셋째 위 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 질서

화립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등급제는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나아가 자칫 잘못운 영되면 행정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영리이든 비영리이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등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서비스가 시행중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우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합리적이면서 자율적인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설부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넷째 위 질서화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질서화립법 제2조 제3호)를 모두 포함하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 질서화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제출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불량이용자 목록작성의 문제, 독립적이어야 할 도메인 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모두 지적할 여유가 없을뿐더러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위 질서화립법의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서화립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매체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해 '질서화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순하다.

과거 군사정권아래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미명아래 입과 귀를 봉쇄당한 경험이 있다. 언론의 등록은 제한되었고 그나마 보도지침에 굴복해야 했으며 불법적인 금서목록에 따라 출판은 제한되었다. 영화, 연극, 심지어 노래와 무용까지 검열에 의해 햇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내 세운 법률에 의해 시행된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한 조치가 법의 탈을 쓴 권력남용의 극단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장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고,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매체로 여겨지는 온라인매체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입과 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와 국가는 인류가 개발한 매체중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이 매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라인매체의 폐해(청소년보호, 온라인성폭력, 온라인범죄 등)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너무 쉽게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온라인매체가 주는 폐해를 인정하나, 온라인매체의 폐해가 정부와 국가의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온라인매체의 폐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질서화립법 추진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불온통신(불법정보)' 규정은 검열의 일종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다양한 입장의 단체, 개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막히는 '질서법'

백우인 (서울산업대 교수)

인터넷의 꿀목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강도에게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강도의 정체는 인터넷에서 언어 폭력을 일삼는 불량배가 아니었다. 인터넷에 법률과 규제의 칼날이 불쑥 들이댄 당사자는 바로 '건전한 질서'를 이루겠다고 나선 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체들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언뜻 정보통신망을 잘 사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들리겠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안에 나타난 구시대적 발상과 저돌적 용기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공청회에서 한 담당자는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척석을 마련하는데' 이 법률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대폭 통합하여, 단칼에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만능 고삐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매스 미디어 시대의 방송위원회보다 몇 배나 강한 권한을 산하 기구에 부여한 이상한 법률 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가칭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처럼 개인정보보호에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그밖의 여러 가지 '등등'에 이르기까지 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우겨 넣은 잡탕 법안이다. 도대체 개인 정보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건전한 통신 질서 확립'이란 게 무슨 1970년대 유신 시대의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확

립쯤 되는 줄 아나 보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우겨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네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이래 최대의 악법이 네티즌의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다. 법률안을 준비한 사람들은 위험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불온통신'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빌미 삼아 질서를 세워보겠다는 심사이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정통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의/제한하며, 무슨 근거로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라는 딱지를 부친단 말인가?

당장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규제와 권한 집중을 가져올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고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부터 느닷없는 인터넷 열풍과 벤처 광풍이 몰아치면서 변죽을 울리더니 결국 무더운 여름밤에 난데없이 '정보통신질서확립'의 천둥번개가 내리치기에 이르렀다.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법률안은 무엇보다도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론의 검증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밤의 복면 강도처럼 급작스레 밀어닥친 것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실무 심의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민간 기구가 참여했고 그 구성원이 누군지 차세에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서 이용자의 책임, 등급표시제, 사용자에 대한 감시, 정보통신망 표준화와 안정성, 도메인 네임분쟁에 이르기까지 네트의 모든 현안을 일개 정통부 산하 위원회가 통괄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만약에 진정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자리잡게 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시행할 일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문제를 하나의 법률안에 통괄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검열과 통제의 집중 이외에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 할 것이다. 정부 주도

의 규제와 통제, 감시로 인터넷을 다잡아 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밝고 건강한 네트'는 우리에게 없다. 도처에 깔리기 시작하는 끔찍한 통제와 감시의 몇 을 걷어내기 위해 네트 사용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술적 검토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 진현규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다.
- 4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 5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등급제 시행계획의 철학을 주장할 것입니다.

2. 「계획서」 5장 1절 내용 개괄

아래의 내용은 「계획서」의 5장 '시스템 구축 명세' 가운데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계획서」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가운데 5장은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시스템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그 구현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로봇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텍스트를 처리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 내용분류 시스템을 구현한다.

○ 관리서버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관리 화면 등을 제공하고, 로봇 에이전트가 검색하여 분류한 텍스트 및 이미지에 대한 URL 등급 확정 화면을 제공한다.

...(중략)...

○ 텍스트 자동 분류

텍스트를 자동분류하기 전에 먼저 각각 해당 카테고리에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져온 문서에서 먼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추출한 단어는 등록된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비교하여 불건전한 내용인지 판단한다.

○ 이미지 자동 분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다. 텍스트 기반 자동분류에서 먼저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하듯이 이미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카테고리와 등급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등록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등록할수록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URL에 연결된 모든 해당 이미지를 가져온다. 가져온 이미지를 정규화를 하고, 내부의 필요한 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컬라, 질감, 모양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내용을 등록된 이미지의 특징과 비교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분류한다.

...(중략)...

○ 유효성 검사

인증된 정보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그 정보가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URL 정보의 내용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닌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 사라진 경우는 무효성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될 것이고, 변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로봇 에이전트'란 특정 홈페이지의 내용을 텍스트(글)와 이미지(그림) 양쪽의 측면에서 자동으로 등급을 매겨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로봇 에이전트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텍스트에 '고등학생 관람가' 등급의 단어가 들어가있는지, 이미지에 '중학생 관람가' 등급의 내용이 들어가있는지를 판단해서 일단 홈페이지들을 분류해놓습니다. 이렇게 사전분류된 홈페이지들을 시스템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3.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 자료의 무한성

1) 패턴인식기술의 적용분야

제가 「계획서」의 내용에 결정적인 의구심을 품게 된 부분은 위의 내용 가운데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으로 시작해 “...분류한다”고 쓰여있는 ‘이미지 자동등급부여 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패턴인식기술의 현재 발전수준이라는 것이, 한 장의 사진을 입력하면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고, 중학생까지는 볼 수 있는 수준의 사진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문자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숫자인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숫자인식의 특수한 분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인식은 「글눈」(하이아트), 「아르미」(합산정보기술) 등, 문자인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지문인식은 요새들어서 많이들 찾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2) 이미지분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통신및신호처리연구실의 고대식 교수에 의하면²⁶⁾,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 포맷팅(formatting): 원 이미지의 디지털화

- 조건화(conditioning): 이미지에서의 불필요한 요소 제거

26) <http://home.mokwon.ac.kr/~kds/multi/multi3/sld013.htm>

- 구조분석(labeling): 사물을 이루는 형태적 요소를 찾아냄
- 집단화(grouping): 구조분석을 통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음
-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광도(brightness), 색상, 객체의 중심점, 영역, 방향, 내접원, 외접원...
- 매칭(matching):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것인지 판단

이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5번째의 ‘특징추출’과 6번째의 ‘매칭’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특정한 그림에서 특정한 ‘패턴’을 뽑아내게 되고, 6번째 단계에서 그 패턴을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이 패턴이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경계인식(edge detection)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하여 ‘경계’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메뉴에서 Filter > Stylize > Find Edges를 선택하면 원본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경계’(edge)란 인접한 점(픽셀, pixel)들의 색상값(RGB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점들을 이어놓은 것으로, 이 ‘경계’를 통해 사람을 배경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그림을 비교해보시면, 어떻게 컴퓨터가 하나의 ‘객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 원본이미지



그림 2. Find Edges 필터 적용 이미지

이렇게 원본이미지로부터 어떠한 특징, 즉 패턴을 뽑아내고 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과 이 패턴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씩

비교해서 그 가운데 가장 유사성이 높은 패턴—위의 예의 경우, ‘사람이 풀짝 뛰는 장면’—이 있다면, 원본이미지는 그 패턴에 해당하는 그림이었다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구현불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에 의해 특정한 그림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패턴을 다른 패턴과 비교판정할 수 있는데,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게다가 이미 패턴인식기술은 글자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되어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패턴인식기술이 실용화되어있는 분야와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화된 영역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유한’인데 반해,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숫자인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인식이 비교해야 하는 패턴은 기껏해야 0~9까지의 숫자 10개에 불과합니다. 글자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의 경우 11,172가지까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본이미지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유한합니다.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얼굴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카메라에 비친 화상을 통해 출입을 허가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이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연구소에 제출해서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을 등록시켜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방문자가 연구소를 찾아온 경우, 출입허가시스템은 이 방문자의 얼굴을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때 중요한 점은 “원본그림으로부터 추출한 패턴을 비교할 대상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저장되어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번호판의 숫자, 한글 글자 하나하나, 출입자들의 지문정보, 홍채의 생김새 등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단 얘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표, 즉 임의의 이미지에 등급을 설정하는 문

제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패턴의 종류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죠. (음란물의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해봅시다. 만일 전세계의 모든 음란물 사진을 '웃벗고 똑바로 서서 원다리에 손을 얹고 정면을 바라보는 단발머리 여자의 사진',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턱에 꾠고 오른다리를 원다리위에 꼬아놓은 상태에서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는 모자쓴 남자', '첫 번째 인물 머리긴 여자는 화면 왼쪽 상단에 서서 벽을 쳐다보고있고, 두 번째 인물 다리긴 남자는 화면 아래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번째 인물 키작은 남자는 화면 오른쪽 하단부터 중앙까지 45도 각도로 누워있는 사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분류체계를 만든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무한대로 늘어나겠지만.)

음란물의 패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패턴 하나하나와 실제 입력받은 패턴을 일일이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홈페이지 하나에 수십개씩 들어있는 그림들을 다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홈페이지 목록을 추가하고 있는 서치엔진들도 전체의 10%밖에는 목록을 갖고있지 않은 웹세계 전체의 모든 문서를 다 비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구요. 이것이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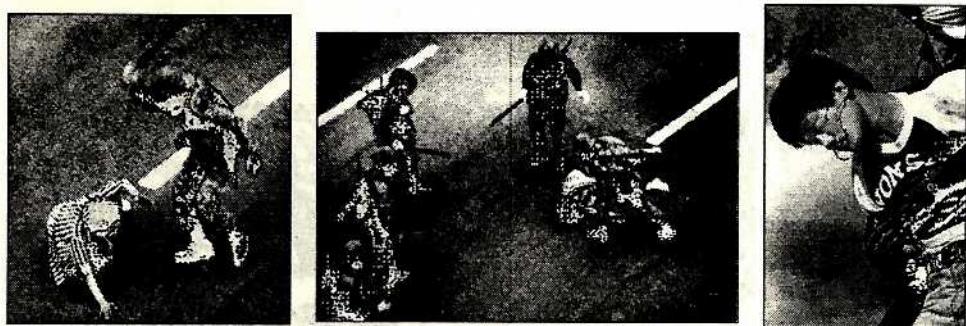
4.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습불가능성

제가 3장에서 논증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에 담긴 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유한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비교만이 가능한 현재의 패턴인식기술로는,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패턴인식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하여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제 주장은 한낱 허튼소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지보다 훨씬 식별하기 쉬운 텍스트에 대해서는 등급제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는 크게 3가지 범주—음란퇴폐, 폭력혐오, 언어—에 대해 세부범주를 두고—가령, 음란퇴폐의 경우에는 노출, 섹스, 퇴폐—있으며, 모두 합쳐서 9개의 세부범주에 대해 각각 0~4까지의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한'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하나의 홈페이지는 노출 3등급, 섹스 2등급, 퇴폐 0등급, 폭력 4등급, 혐오 0등급... 이런 식으로 모두 9개의 등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²⁷⁾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등급대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란, 다른아닌 사회구성원들, 즉 바로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맥락입니다. 긴말씀 드릴 것 없이 바로 실제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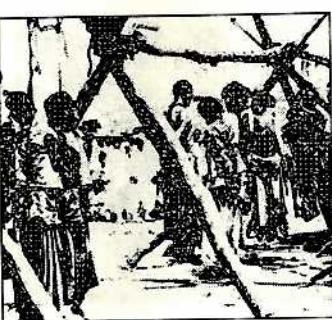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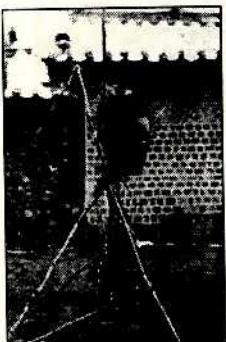


1. 먼저 위의 유명한 사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가운데 사진은 '폭력' 범주의 3등급(둔기를 사용한 격투내용)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둔기로 구타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지요? 그나마 이 사진만으로는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 범주의 4등급(살인, 린치 또는 가학이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내용)에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이한열 열사 사진은 '폭력' 범주의 4등급에 무난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27) 이 등급분류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http://www.rating.or.kr/tiral/ICEC9901.hwp>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걸쳐 나와있습니다. 반드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왼쪽의 사진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났으니, '음란퇴폐' 범주의 4등급(성기의 노출)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진이 풀리처상을 받다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군요) 오른쪽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사진은 '혐오' 범주의 2등급(문신, 낙인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3. 왼쪽과 가운데 두 장의 사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있는, 관군에 의해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모습은 '혐오' 부문의 4등급(신체절제 / 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묘사 내용)에 해당되어,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이동박문)을 저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기준에 따르면, '폭력' 부문의 4등급(총포도검에 의한 육체 손괴, 파손, 절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진들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50년 구국운동' 기획사진전²⁸⁾에서 가져온 것 들이며, 당연히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사진

28) <http://www.nis.go.kr/menu/m0600000/m06050300.html>

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게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기준은 이미지와 텍스트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글들 역시 '폭력물', 혹은 '음란퇴폐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1.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의해 '폭력' 부문에서 4등급(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고문, 위협)과 '혐오' 부문에서 4등급(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 묘사)을 받음으로써, '요주의도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서점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이 책을 더 이상 인터넷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역죄인 다미앵은 파리 성당의 정문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속옷만 입은채 2파운드의 뜨거운 밀랍햇불을 들고 사형수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레브 광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마련된 처벌대 위에서 그의 젖가슴, 팔, 넓적다리, 종아리 등이 벌겋게 달궈진 집게로 지져졌고, 왕을 내리쳤을 때 사용했던 칼이 들려진 오른손은 유황불에 태워졌으며, 살점이 찢겨나간 그 신체부위들에는 끓는 납, 끓는 기름, 타는 송진, 그리고 유황과 밀랍의 혼합물이 뿌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은 네 마리 말에 사지가 묶이는 차열형(車裂刑)에 처해져 사방으로 찢겨졌으며, 이어서 그 조각난 사지와 몸이 불에 태워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바람에 뿌려졌다"

2.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놓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는 '섹스'의 4등급(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노골적인 성행위)과 '혐오'의 4등급(대변, 오줌, 정액을 신체에 접촉 및 먹는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증언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증언을 유지하고 성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 군인 중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많았다. 자신의 성기를 뺄라는 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이고 서서 하자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었다.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출판된 『온주 핫타이』(48體)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책에 나온 체위대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나는 조선말로 욕을 해

댔다. 지금도 나는 우유를 못 먹는다. 우유를 보면 남자 정액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²⁹⁾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니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에서 다루어진 매체를 ‘혐오물’, ‘폭력물’, ‘음란퇴폐물’로 간주하고 청소년들에게 위 매체를 볼 수 없게 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 매체를 ‘혐오물’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매체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이 매체는 ‘혐오물’이 아니라는—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 역시 그러한 맥락과 배경지식을 체득/학습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시킨다 해도, 절대로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컴퓨터 시스템이 그런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있다면, 그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일테니, ‘그/그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정식으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인식기술의 발전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 자동등급부여시스템의 실현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5. 결론: 인터넷 등급제 시행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1) 인터넷 등급제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관계

인터넷의 바다는 넓고 또 깊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효를 갖는 영화에 대한 심의과정에도 인력과 자원문제가 존재하는데, 포털사이트들도 전체의 10%밖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대한 심의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은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시장규모가 매년 90%씩 성장하고, 12~18개월마다 두배씩 호스트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기계(컴퓨터)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결

29)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증언집 목록 가운데 윤두리 할머니의 증언에서 발췌.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itness.peacenet.or.kr>이다.

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컴퓨터에게 인간세계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아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세상에 어떤 기계가 완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동분류기계에는 ‘예비분류’만을 맡긴 것 아니냐. 지금 우리의 계획에 나와있듯이, 최종판단은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컴퓨터에게 ‘예비분류’라는 임무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해봤자 글자 하나가 틀리고 마는 글자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에 대한 타인의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버리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장에서, 그 ‘자동분류시스템’이라는 것이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판단—그것이 음란물인지, 폭력물인지 등의 아주 협소한 분야에 국한되더라도—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였습니다. ‘판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시스템’에게는 ‘예비분류’이든 ‘최종분류’든 어느쪽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 사법기관에서 대법관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해서 고등법관의 역할을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자동시스템’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3)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며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급제 시행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성격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등급제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신을 위치지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이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결정하고(통신질서확립법

30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33조).

저는 바람직한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해낸 것이 겨우 이런 수준인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개인들 사이의 모든 문제에 국가가 사사건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과, 그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낱낱이 알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단체 의견 (1997)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¹⁾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미국시민권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터넷에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규제든지, 그것의 목적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그것은 돼지를 잡기 위해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 리노와 ACLU 재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1997년 6월 26일)

등급제를 제고하자

이 글은 다양한 인터넷 차단이나 등급제들이 표현의 자유에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박을 시도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제도들은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거친 발언과 표현들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고, 몇몇 제안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등급제와 차단 제도에 있어 더욱 심상치 않은 사실은, 이 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대법원이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것들 중 대중적 표현에 대한 가장 직접적 관여의 형태'라고 언급했던 통신품위법만큼이나 위험한, 개인적인 '자기 검열'의 암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나 인터넷 이용자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부모들이, 등급제와 차단 제도들이 실현되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1997년 미국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두고 정부, 업계, 시민단체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 글은 미국의 대표적 시민 단체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에서 당시 작성한 유명한 문서의 일부이다. 원문 및 전문은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에서 구할 수 있다.

의미있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과 지침을 제안한다.

권고안과 지침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최선을 안다.

어떤 표현에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선적 책임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다. 국가보다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이 있다.

○ 표현의 자유를 초기값으로 설치하라.

산업계는 발언자가 자신의 표현을 등급화하도록 요구하거나 초기값으로 차단되는 상품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 소비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차단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계는 통제권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여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강요나 검열이 없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인 인터넷 검열 제도를 강행하거나 산업계에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 구역이 되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시민들이 그들의 표현을 '자율 등급'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표현의 자유 역사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온라인 표현에 등급을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책이나 잡지 출판업자들이 자신의 모든 기사나 이야기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길에 서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내용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만큼 수정헌법의 조항에 공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 등급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의 책, 잡지, 표현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들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이유와 관련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왜 ACLU가 자율 등급에 반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Critical Path Aids Project)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었다. 그러나 등급을 부여한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그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십대들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등급제의 결과는 매우 불공정하다. 검열은 그 자신의 언어적 정의에 의해 가치가 저하되며, 표현의 차단을 초래한다.

백악관은 인터넷 등급제를 '식품 표식'에 비유했지만 이 비유는 틀렸다. 식품 표식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와 같은 식품에 든 지방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표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또한 식품 표식은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 위에 붙어 있는 반면, 인터넷 표식은 어떤 표

현들을 이용자들의 접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이에 대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은 쿠로미야의 것과 같은 표현들이 헌법상 최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인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제와 같은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쿠로미야는 등급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거리나 서점에서 인쇄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상 수정헌법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 저질의 등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네트워크 예술'(Art on the Net)은 몇 백명의 예술가들이 작업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매우 거대하고 비수익적인 웹사이트이다. 때때로 루벤스적인 회화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광범위한 예술작업들의 대다수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는 예술에 적용될 때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가 된다. 그러나 등급제 하에서는 네트워크 예술이 자신의 사이트 내에 있는 26,000개 이상의 페이지에 등급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화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쾌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부여를 거부하면 이들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점 중 하나는 인터넷이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을 위헌판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요금 제도는 상업적 내용제공자들 뿐 아니라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페이지들에 자율 등급제를 짐작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시장에서 수많은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등급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쉬운 것이 아니다. 뉴욕 주의 온라인 검열 법령에 대한 ACLU의 소송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터넷 전문가 ALA v. Pataki는 그의 온라인 뉴스레터에 RSACi 등급을 부여하려고 여러 시간 노력했으나 마침내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더구나 등급체계는 인터넷 내용물들의 다양성을 다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 정도로 주관적인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한 여성의 걸작품은 다른 여성의 포르노일 수 있다. '지나치게 명백한' 혹은 '노골적인'과 같은 등급들이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급제가 예술적인 가치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자신에게 맡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비슷하게 뉴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들의 다양성은 등급 부여를 어렵게 한다. 전쟁을 촬영한 사실적인 기록들은 '폭력적임'으로 등급이 부여되어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만약 뉴스 기사들이 욕설을 한 단어라도 담고 있다면 그 단어는 개별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전체 기사가 차단되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뉴스 조직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합법적 뉴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난처해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당신이 네트워크상의 수천개에 달하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 중 하나에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당신은 답변을 하고 싶다.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등급 체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다. 당신은 RSACi의 웹페이지를 읽었지만 당신의 답변에 포함된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논쟁에 등급을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잘못 등급을 부여한 경우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글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율 규제의 단점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대화가 오고가는 장소에 적용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페이지를 운영할 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짧거나 긴 메시지를 대화방,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올린다. 인터넷의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길에 서서 혹은 저녁 모임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들에 등급을 부여하라는 것과 유사한 요구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적인 메시지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쟁적인 그룹들이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여된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게다가 부적절한 내용을 몇몇 포함하고 있는 토론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가치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그룹이 봉쇄 차단될 것이다.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요새로서의 미국'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이다. 그리고 당신은 인류학자로서 당신의 문명에 대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출판했다. 당신은 당신의 논문들을 세계에 있는 다른 학자나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렸다. 당신은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동향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당신은 몰랐다. 그러나 당신의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당신 동료 중 어느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는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등급제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과 외국에서 생산된 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가능성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글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힘있는 미국 산업계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등급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

는다 해도, 이 등급제가 뉴기니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십대 소년이 남성이 되기 위한 의식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류학 논문이 있다. 당신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아 이를 '고문' 혹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가?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성적인 사진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Betty's Smut Shack의 웹мастер는 만약 '성적으로 명백함' 등급을 부여받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전체 사이트에 '청소년들에게 괜찮음'이라는 등급을 부여했다. 미드웨스트의 한 강경한 하원의원은 현재 청소년에게 그 사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해서 즉시 등급이 잘못 부여된 이 사이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등급이 잘못 부여된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자율 등급제의 전체적인 개념은 붕괴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을 판결했던 대법원은 이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신품위법의 경우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입법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산인 워싱턴에서 온 상원위원회는 잘못 부여된 등급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제안했던 바 있다.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별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afe Surf는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연방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발언자들이 자신의 표현에 태만하게 등급을 부여하면 부모가 그 발언자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좋은 의도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여지는 예는 등급제의 적용이 정부의 강력한 검열제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검열의 대상은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나 '죄수 강간을 중단하라', '계획적 부모', '인권 감시' 혹은 ACLU 소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다양한 동성애자 조직들과 같은, 힘없고 논쟁적인 발언자들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디즈니나 타임 워너 같은 거대한 오락 기업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청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웹페이지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표현물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제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법적인 조언자를 고용할 돈이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터넷의 상업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민주적인 특성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발언자들로 인해 상업적인 발언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디즈니 사이트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두 발언자를 모두 세계적인 청중들에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자율 등급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 매체를 강력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맥빠지고 동질화된 매체로 바꿀 것이다.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PICS 표식과 연관된 제3자 등급제는 자율 등급제의 표현의 자유 시비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했다.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등급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발언자들에게 자율 등급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등급 설정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PICS의 원래 제안에서 강조된 것은 제3자 등급제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등급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제3자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등급제는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생기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매일 수천 개씩 새로 생기는 사이트를 포함한 백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을 어떤 한 회사나 조직이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제3자 등급제 하에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가 차단될 것이다.

먼저 등급이 부여될 사이트를 선택할 때, 등급을 부여하는 제3자들은 비상업적이거나 개인들의 사이트들은 차치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등급제는 성인이나 나이든 청년 층에게도 가치있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주관적이고 가치 개입적 등급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제3자 등급제에는 공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제3자 등급제 상품이 덜 생산될수록, 독재적인 검열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강력한 기업들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가지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가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넷스케이프를 사용한다면 이들의 브라우저는 RSACi 등급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RSACi가 인터넷의 기본 검열제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특정한 등급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을 유린하는 것이다.

검열제도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제3자 등급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와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영화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수만이 생산된다. 반면 인터넷 내용물의 양은 무한대이다. 영화는 적은 수의 감독들에 의해 창조되는 통계적이고 정의할 수 있는 생산품인 반면, 온라인 표현은 불연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담화적이다. 또한 MPAA 등급은 자동 차단 기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검열 전쟁들 속에서 시장은 이용자 기반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있었다. 각 회사들은 운영진들에게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표현을 차단하는 데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할 것을 재촉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종종 주제어에 기반해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ACLU는 통신품위법이 부적절한 자료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우리는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덜 제한적인 대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t Nanny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를 원할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표현에 벌칙을 부과하는 어떤 법령보다 이것들이 낫다고 믿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등급제들은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들보다 훨씬 더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다.

각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단 기제를 켜거나 끈다. 이 프로그램들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들이 100%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 상품들은 제3자 등급제나 자율 등급제와는 다르게 브라우저나 검색엔진과 더불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물론 이런 '단독 설치형'의 특징들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원리와 배치된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벌칙의 위협 하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들의 사용이 등급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 논란을 다소 피해가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제품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안전한 쇼핑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부모의 허가 없이도 청소년들에게 접근권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은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 다른 상품들은 동성애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몇몇 상품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제품을 비판하는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어떤 제품들은 차단된 사이트들의 목록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빼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차단 목록에서 플레이보이 사이트 목록을 지움으로써 접근을 허용하거나 파워레인저 사이트를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접근을 금지하는 등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들은 차단 목록을 뺀 수 없는 특허적 정보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단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산업체에 의해 열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최근의 백악관 회담에서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자리를 함께 한 고어 부통령은 다양한 차단 프로그램들에 접속할 수 있는 www.netparents.org 사이트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ACLU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생산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제적인 통제권을 주어야 하며 차단 기준과 차단 목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CLU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단 목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설정권 없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별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한 하급법원 판사가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끝이 없는 전세계적인 대화'에는 모든 시민들이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가정의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이나 자율 등급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ACLU는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마찬가지로 공공 도서관들에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도서와 정보 자

원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해왔다. 오늘날 미국 도서관의 20% 이상이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에게 검열관이 되도록 강제한다면 이 꿈은 크게 좌초 할 것이다.

최근ALA 정책 발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장소이다. 최근의 차단/선별차단 소프트웨어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들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불가피하게 차단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업무로 삼고 있지 않다.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검열해야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서관의 결정은 장서에 특별한 책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의 합법적인 결정 영역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차단 프로그램의 결정들은 전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손을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별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ALA가 발표했듯 ‘선별차단은 공동체에 생산자의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선별차단 프로그램은 차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들은 어떤 자료들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덧붙여 인터넷의 정보제공자들은 어떤 도서관이 그들의 표현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에 대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속까지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몇 가지 수정헌법 상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근거 중 하나였다.

성인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고 청소년에게만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위험 시비가 제기된다. 청소년, 특히 좀더 나이든 청소년들은 이용자 차단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차단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미덕 중의 하나는 아이오와 데모인에 거주하는 고립된 게이 청소년들을 성 정체성에 관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어딘가의 청소년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에이즈와 다른 성적인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CLU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함께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들도 역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로지 부모들의 허가 하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전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도서관 차단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추천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도서관은 공중의 시선이 최소화된 길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째, 도서관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시간 제한을 들 수 있다.

결론

ACLU는 항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부모들과 아이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는 사서 지침서 - ‘인터넷 전문용어, 안전 팁, 사이트 선택시의 충고,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오락 사이트와 교육 사이트들의 50개 이상 되는 목록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와 안내서’에 대한 ALA의 성명을 환영했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우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미 외설, 아동 포르노, 아동 교사에 대한 법률을 인터넷에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인

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 일이 다.”

사실상 인터넷의 많은 발언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온라인의 ACLU 사이트는 이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지역’임을 공지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고문을 담고 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종종 자료들이 성인에게 적합하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대화방과 뉴스그룹들 역시 그들이 토론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메일들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전 정보는 앞에서 언급된 등급제와 구분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언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제공된다. 둘째, 이 용자들이 더 읽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세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자들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네째, 발언자들이나 읽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표현들을 보이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째서 검열제도보다 많은 발언들이 나온 책임인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안을 인터넷 공동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기에 아직 늦은 것 이 아니다. 인터넷을 아이디어의 진정한 시장에서 또다른 주류, 즉 TV보다 재미 없고 다양성이 없는 내용이 가득찬 생기 없는 매체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민, 인권 단체, 사서들과 인터넷 이용자들, 발언자들과 제공자들이 모두 함께 통신품위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했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다. 인터넷에 최고의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가시적이고 위협적이었던 불을 재빨리 껐다. 다음 번에는 이 불을 추적하고 끄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관련 언론 보도

제목 :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나

출처 : 한겨례 2000/07/19일자

시민단체 ‘법률개정안’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19일 개인정보보호 의무강화,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공청회를 연 뒤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정부통제 의도인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대리점에도 부여하고, 14살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YMCA시민중계실은 “이번 개정안이 정보제공·이용, 통신내용 등 컴퓨터통신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 조항은 개선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논란=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표시한 뒤 유통이 가능하도록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대해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이며,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포괄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분쟁기구 정부독점 논란=개정안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

고 자료조사권,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건의권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컴퓨터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어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메인이 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목 : 정보내용 등급화 또다른 검열

출처 : 한겨례 2000/07/20일자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전면 철회요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다시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례> 20일치 21면 참조)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 제와 같은 발상”이라며 “자율적으로 불법·유해 정보가 걸러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관한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목적의 표현통제가 가능하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사실상 통신망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부쳐 ‘일자리 만들기’ 차원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은 “등급표시제의 경우 이전에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되던 것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만 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 [초점] 검열 유령이 온라인 덮친다

출처 : 한겨례21 제319호

정보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정부통제 강화…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말살한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려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탐구하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20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질서확립법)을 둘러싸고 검열 공방이 오갔다.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원을 재경원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법으로 전락했듯이 정보내용에 대한 모든 심의권을 정보통신윤리위에 맡겨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만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질서확립법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와 정보제공자들의 책임 확대, 통신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윤리위의 대폭적인 역할 강화를 고리로 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며 질서확립법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사이버 영토 독립’을 외쳐온 통신단체들은 질서확립법을 또다른 ‘검열 시대’의 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질서확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이 법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쪽도 윤리위이다.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개입할 근거 마련

심의기구인 윤리위에 대한 통신관련단체들의 ‘심의’는 윤리위가 민간 자율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에 개입하는 도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광운대 박영식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목사, 언론인 등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의 올해 예산 21억3천만원은 전액 국가가 대주고 있다. 윤리위가 올 상반기 동안 정보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및 해지한 것은 8천건을 웃돈다.

지난 5월 백두청년회 명의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판 글 삭제파문은 윤리위가 국가의 심의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다. 윤리위의 한 위원은 “백두청년회 건은 청와대와 검찰 등으로부터 ‘우리가 하기 뭣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자 윤리위에 악역을 떠넘긴 것이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정통부와 협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정통부로부터 이런 안을 분과위에 올려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한다. 구성은 민간인들로 돼 있지만 정통부 산하기관이기도 한 것 이 사실이다”라고 고백했다.

윤리위는 시정요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온통신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 물론 건의가 오면 정통부 장관은 곧바로 시정요구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 변호사는 “누가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둘리고 있을 때 구청직원이 나와서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윤리위의 건의에 따라 정통부장관이 통신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번 질서확립법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대목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다. 등급제는 유해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문제는 등급 기준과 부여, 표시 방법은 윤리위가 맡게 된다는 데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사실상 검열이다. 등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등급외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영화상영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질서확립법은 자율적으로 매겨진 등급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를 포함해 누구든지 등급조정을 요청하면 윤리위가 등급을 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통신단체들은 등급제를 통신검열의 특수한 형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은폐된 검열권력’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데이콤 윤종성 상무는 “같은 정보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마다 다른 등급을 매길 것이고 누구나 등급을 낮게 매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급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등급부여 권한을 모두 윤리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윤리위쪽의 대답은 이런 현실을 이미 짐작하고 법안이 제정됐음을 보여준다. 윤리위 이영규 사무국장은 “윤 상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어차피 정보제공사업자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윤리위가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심사’ 쪽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어디까지 ‘영리’로 볼 것인가는 판단도 결국은 행정기관이 할 수밖에 없다. NGO의 인터넷활동도 광고를 받으면 영리고, 가입비를 받거나 회원가입을 받아도 영리로 볼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다.

등급 매기고 통신망 이용 원천봉쇄도 가능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규정 역시 윤리위의 역할 강화에 맞춰져 있다. 질서확립법은 정보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유통시킨 것이라도 그 정보를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도 등급제와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윤리위 이영규 국장은 “정보제공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다. 불법정보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알아서 통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보호가 끝나고 제재가 시작되는 불법정보의 경계선에서 윤리위가 ‘교묘히’ 개입할 공간을 찾은 것이다. 특히 윤리위로부터 불법정보라고 통보받은 경우 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윤리위가 통신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이 통신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질서확립법은 윤리위에 불량이용자들의 전체통신망 이용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력도 주어주고 있다. 정보제공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평소 로그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불량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윤리위에 통보해야 하고 윤리위는 이를 다른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줘 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은 “정보통신윤리위가 준사법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통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다른 목적의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사이버공간은 자유롭고 강하게 표현한다. 표현의 자유도 오프라인세계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 온라인 표현양식의 다양성을 감안해 전자 민주주의에 맞는 새로운 규제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도정일 교수(영문과)의 말은 검열장치의 은밀한 잠입과정을 보여준다. “검열이 길들여져 내면화하는 순간 검열관의 얼굴과 이름은 상실된다. 검열이 내린 금지명령은 진리로 규범화하고 억압은 더이상 억압으로 의식되지 않는다”

주홍글씨 어떻게 새기나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겨서 나이에 따라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다. 상품에 붙은 바코드처럼 인터넷 HTML 문서에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질서확립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등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는 자율 등급부여와 제3자 등급서비스기관이 등급부여서버를 이용해 등급을 매기는 두 가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율등급부여는 홈페이지를 가진 개인이든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사업자든 자기가 제공할 정보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기하는 것이다. 제3자 등급시스템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정보내용에 대해 등급서비스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는 서버(프락시-레이블뷰로)를 이용해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최종 이용자는 등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걸려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등급은 0~4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물론 불법정보로 분류돼 '등급외 판정'을 받는 콘텐츠도 있게 된다. 등급은 성, 노출,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에 걸쳐 매겨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정보의 국제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PICS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RSACI와 SafeSurf의 내용등급체계를 기준으로 정한 방침이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정보 선진국들은 등급기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하고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범유럽적 등급 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자율 등급을 원칙으로 2002년부터 등급표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체가 자체 등급제를 개발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가 차단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와 인터넷 정보제공자(IP)에게 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목 : 정부의 인터넷등급제 시행 '정보사전검열' 비판 고조

출처 : 경향신문 2000/08/18일자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밑에 등급표시심의기구를 설치해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 가운데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표시기구가 직접 등급을 결정해 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된 콘텐츠 등급에 대해서 정보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도 그 적절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등급표시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등급을 표기하거나 사업자의 등급을 심의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지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로 확대 규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행정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물론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아래 통신내용(contents)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 포괄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며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이며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며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의 조형진씨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한 등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나 정보가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네티즌들도 정통부 게시판 등에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PC통신 동호회 '넷츠고 통신 자유모임'은 "등급이라는 명목으로 사이트 폐쇄, 삭제 등이 남용되고 검열이라는 도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우스꽝스러운 검열의 잣대가 첨단 인터넷 세상으로 회귀함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열 반대'라는 네티즌은 정통부 사이트에 "창작물에 대한 심의 등이 민간주도로 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국가기관이 등급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따라서 이 등급제는 네티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완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 사무관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사무관은 "인터넷의 모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정보로 판정을 받은 내용이나 불법정보(수간, 강간, 아동포르노, 성폭행 등) 제공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사무관은 "지금은 심의단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 네티즌·시민단체 온라인 시위

출처 : 중앙일보 2000/08/20일자

네티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훌리건' 등 무절제한 사이버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및 네티즌들은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침에 반발, 20일 오후 10시부터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통부와 일반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도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법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호소했다. 정통부 사이트에는 이날 오전부터 네티즌들의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다.'희망동네'라는 네이션은 "21세기형 독재의 부활을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다른 네이션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 발상은 왕조시대 같은 행태"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에서 凉념?난무하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사이버 훌리건'이 판치는 등 무질서가 극에 달했다"며 "조만간 여론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등급 표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 : 인터넷상의 보안법?

출처 : 한국일보 2000/08/21일자

인터넷상의 보안법인가.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인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시민단체와 네이션들의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불건전정보유통 예방을 위해 정통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질서확립법안')이 뜻밖의 격렬한 사이버 시위와 철폐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 온라인 시위

정통부의 '질서확립법안' 공청회 한 달을 맞은 20일 오후 10시부터 시민단체와 네이션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시대적 법안을 철폐하라"며 본격적인 사이버 시위에 나섰다. 첫 반대글을 올린 조용진씨는 "인터넷 상에 흐르는 정보는 국가나 권력 기관이 강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낮12시까지 시위에 참여한 사이버시위대는 350여명. 이들은 '검열반대'라는 머리글을 달고 "통제라는 발상자체가 지겹다"는 등 항의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쓰레기의 바다. 자율정화는 꿈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 서로 맞서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인터넷상 보안법인가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등급제 도입 여부. '질서확립법안'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吳炳一·30) 인터넷사업팀장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다"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金基中·35)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시민단체의 오해?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한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음란·폭력물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르다"면서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규제나 통제권한은 크지 않다"며 "게다가 제도정착 후에는 민간에 모든 권한을 이양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목 : 정통부가 언급한 시민단체들 발끈

출처 : 데일리클릭 2000/08/28일자

- 통신질서확립법 협의조차 한적 없다 -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보통신부(www.mic.go.kr)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언론 대한매일(www.kdaily.com)의 보도에서부터다. 대한매일에서는 지난 21일 통신질서확립법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정통부의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중 정통부 관계자가 "학부모정보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협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장로교 시민연대 등 7개 단체"들에서 지난 2월부터 이 법의 개정에 참여해왔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YMCA를 비롯, 이름이 거명된 관련단체들은 정통부와 해당 법률에 대해 같이 협의한 적도 없다며 정통부에 강력히 항의해왔고, 급기야 지난 2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통부에 정식으로 항의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항의문에서 이 단체는 "본 상담소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안 철회성명서를 낸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본 상담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통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나서자 해당 언론사는 추후에 이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취재해 기사화 시켰으나 정통부에서는 아직 묵묵 부답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은 상담소 측에 지난 '사이버성폭력 추방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것과 착각을 일으켰다는 말로 얼버무렸을 뿐이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경 여성단체들에서는 정통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성폭력 추방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계획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운동을 막게 되면서 여성단체들은 모두 여기에서 손을 뺏다는 것이다.

양준철 심의관의 말은 이 때의 사건과 착각을 해서 상담소를 거명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상담소 측은 "말도 안돼는 변명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말 양 심의관이 착각을 했던 거라면 그 때 같이 참여했던 다른 여성단체들은 왜 거명하지 않았으며, 또 그때의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단체들은 왜 거명했나"는 주장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소 측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통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분명한 뜻을 전하는 한편,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법개정 철회운동을 힘 있게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목 :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차단 실패율 높다

출처 : 전자신문 2000/09/09일자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음란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나 정상 사이트를 불건전 사이트로 잘못 인식해 정보접속을 방해하는 비율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초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정보감시단 등단체가

「청소년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평가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실패율이 최소 8%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 사이트를 불건전 사이트로 인식해 접속을 방해하는 접속 방해율도 최소 8%에서 최대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 프로그램 차단 실패율을 조사한 결과 키즈레디(45%), 안티엑스(43%), 넷피아(35%), 파로스(31%), 수호천사 배포판(27%), 아이사랑(18%), 녹스(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정보가 아니면서 유해정보와 URL이나 검색어가 비슷해 차단당할 우려가 있는

접속방해 비율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수호천사(41%), 아이사랑(40%), 키즈레디(35%), 지킴이(33%), 킴지기(33%), 안티엑스(20%), 녹스(10%), 넷피아(9%), 파로스(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시 비밀번호 기능이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정보접근을 막지만 정작 초등학생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목 : [미국] 인터넷 위원회 인터넷 규제 '신중' 권고

출처 : 한겨레 2000/09/02일자

인터넷이 지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의 진보를 각종 규제로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인터넷 분석 단체가 충고했다고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정책 입안가들에게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단체인 미국인터넷위원회는 '2000년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장차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들을 소개했다.

인터넷 위원회는 지난 96년 결성됐으며 위원들은 미국 뿐 아니라 외국 지도자들과도 만나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6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온라인 교육 장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의 간섭 제한, 무선 통화 혁명 등이 인터넷의 미래가 안게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 관리들에게 인터넷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택하도록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인터넷의 무한한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개인이 온라인상의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물리적 제재 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정부는 인터넷 사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윌리엄 마이어스는 "네트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전통적 방식에 적대적"이라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와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나 지리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인프라 확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납부나 면허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정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이 인터넷의 혜택을 독점하는 디지털 격차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원회

는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의 법집행 부문에서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고유 등록 웹페이지 수가 지난 1월 10억개였으나 지난 6월 현재 20억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 93년 9만명 이하였으나 올해엔 3억4백명으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서 지적된 특기할 사항은 무선 전화 보급률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뒤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표준 규격이 시장에 나돌고 있어서 상호 운용성과 서비스의 호환성에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수는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 [정통부]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출처 : 한겨레 2000/09/22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두려다 여론에 밀려 삭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통부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온통신' 조항을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제 추진과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주는 방법으로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한 부분을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계해 시행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된 '불법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불온통신' 규정을 끌어다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원회에 정보등급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주어 사실상 정보에 대한 등급을 매기려 하다가 물러선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갖는다'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통신질서확립법 가운데 '불법정보'와 '윤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부분을 삭제해 그동안의 활동으로 약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니 뒷통수를 맞은 꽃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3일을 '입법예고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와 잡담회를 잇따라 열고, 밤 10시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제목 : [사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해?

출처 : 중앙일보 2000/09/28일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지원' 토록 규정하고 있다.

취지야 어떻든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1994년 폐지된 보안감사 제도의 부작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기밀사항'이라는 한마디로 국회의 예산결산.안건 심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별다른 견제.사후감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대다수가 관련된 통신.컴퓨터망을 국정원의 '보호'에 둔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넘어 국정원의 정보통제라는 가공할 사태까지 예상할 수 있다.

법안의 대상은 '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국정원은 이들 시설에 대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예방.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업무 지원과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민간회사나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 인터넷 접속.PC통신 내역, 은행거래 현황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물론 관련된 다른 법적 장치들이 있다지만 국민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가시게 하기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왜 국가.공공기관 '해킹방지사업'의 전면에 나서려 하는지 의문이다. 해당 부처가 민간기술진과 협조해 대응할 수 있고, 국정원의 기존 '전산망 보호지침'으로도 정부기관의 전산망을 얼마나 점검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에도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만 점검할 뿐이지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다"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스스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제목 : [정통부] 시스템마비 놓고 정통부.경찰청 갈등

출처 : 연합뉴스 2000/10/11일자

지난 8월말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시스템 마비사건의 수사결과를 놓고 경찰청과 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을 내리자 정통부가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경찰청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통부 내부 시스템 결함이나 시스템 운영자의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서비스거부 공격 프로그램'이 고의로 사용된 혼적이 없다는 점과 다수의 동시다발적 접속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권위있는 조사부처인 정보보호센터가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시스템 공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경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말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게재된 정통부 공격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정통부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정통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정통부 시스템마비 사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지 어느 한쪽의 위상과 자존심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통부는 '시스템 결함 확인 조차하지 못한 성급한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반대일 경우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무능력한 수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목 : [칼럼@IT] 인터넷 등급제 '득보다 실'

출처 : 중앙일보 2000/10/15일자

얼마 전 청소년으로부터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내용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 방침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건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내용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청소년 보호 효과도 의문시된다며 인터넷 등급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세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따라서 인터넷이 적절히 규제되고 통제돼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여과되지 않은 채 범람하는 음란 폭력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인터넷등급제가 시행되면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며, 이용자가 등급을 보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득력있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정보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의 상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해칠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통신 공간의 음란 폭력을 규제는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다.

그러나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끊임없이 정보수용자의 능동적 개입과 참여를 요구하고 정보에 대한 식별력을 키워주는 만큼 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어떨까.

둘째, 표현의 자유 문제다.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준에 따라 걸려내야 할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본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컴퓨터 속의 정보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

또한 통신망 안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모두 규제하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 웹사이트까지 살살이 뒤져야 하는데, 이 경우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셋째, 정보 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의 문제다. 통신공간에서 하나의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보내용을 심의하고 그러한 기준의 적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오늘의 통신네트워크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용자가 동시에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용자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넷째, 인터넷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자를 처벌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이뤄지는 진정한 자율 규제에 동참할 정도의 힘 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위반한 자는 전문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에 충실히 해야 할 때다.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